

신용장통일규칙상의 항공운송서류(UCP 500의 Air Transport Documents)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매도인(수출상)과 매수인(수입상)이 각각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개입한 지급약정(支給約定)을 뜻한다.

이러한 신용장의 국제적인 거래규칙인 이른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는 1933년 ICC(국제상업회의소)¹⁾ 비엔나 총회에서 처음 제정된 후 지난 1993년까지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

구분	연도	번호
제정	제1차 개정	1933년
	제2차 개정	1951년
	제3차 개정	1962년
	제4차 개정	1974년
	제5차 개정	1983년

19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약칭 UCP 500)은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운송서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s)에 관해서는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CP 500 제27조(항공운송서류)

a.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서류를 수리한다 :

- i. 문면상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고 다음에 의해서 서명되었거나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대리인도 그가 대행하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의 명칭과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 ii. 상품이 운송을 위해서 인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 iii.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자를 요구한 경우 이러한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서류. 항공운송서류상에 그렇게 명시된 발송일은 선적(기적)일로 간주한다. 본 조항에서는 항공편 번호 및 날짜와 관련해서 항공운송서류상의(운송업자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한) 해당란에 기재된 정보는 발송일자의 명확한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그리고
- iv.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 v. 비록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탁송인/송하인 앞 원본으로 표시된 서류, 그리고
- vi.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는 것으로 표시한 서류 ; 그리고

1)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국제무역의 개선, 거래관습과 법제의 국제적 통일, 상거래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및 사업자단체와 실업가의 연락제휴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경제단체로 1920년에 설립되었다.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UN의 A급 자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창설 이후 세계통상상의 장애제거에 노력해왔고 각국에 그 나라의 회원이 조직한 국내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입하였고, 1959년 2월 24일 국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은행은 이러한 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vii 기타 신용장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

b. 본 조항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도착공항까지의 운송도중에 한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화물을 양하하여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c. 비록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다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항공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로 커버되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UCP 제27조는 항공기의 기적(機積)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하였으며, 다른 운송서류와 같이 정당한 항공운송서류의 기본요건을 정리하고, 특히 은행이 항공운송서류를 수리하는데 충족하여야 할 기본요건을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²⁾.

◇ 수리가능한 서류조건 및 기적일자

따라서 신용장(L/C)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① 운송인의 명칭과 함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 ②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 ③ 실제의 발송일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별도로 명시한 서류
- ④ 지정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명시한 서류
- ⑤ 탁송인/송하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으로 구성된 서류
- ⑥ 운송에 관한 이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특히, 제27조 a항 호에서는 항공운송의 기적일(機積日)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항공화물의 수령일이나 기적날인과 항공기의 운항일(flight date)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date of dispatch)을 요구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서류상에 명시된 발송일을 기적일로 간주하도록 정리하였다. 또 신용장이 전통의 원

본서류를 요구하더라도 항공운송서류에 있어서 '원본(original)'이라고 하면 이는 무조건 '탁송인/송하인 앞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³⁾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환적의 의의와 환적조항부 서류

또한 항공운송에 있어서 '환적(transshipment)'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목적공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양하하여 재기적(再機積)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항공운송장(AWB)상에 "환적될 것이다"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기재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운송은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로 커버(cover)되어야 한다.

이번 제5차 개정작업에서는 항공운송의 환적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노선에 의한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 출발공항으로부터 목적공항에 이르기까지 환적없이 직접 운항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컨대 유럽에서 극동공항까지의 운송에 있어서 대부분 유럽의 항공사들은 화물을 중간공항에서 양하하여 제3운송인에게 환적해주고 있다. 이는 유럽의 항공사들 대부분이 극동의 국가나 도시에 영업소를 두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유럽공항까지 운송하여 다시 유럽에서 중동공항으로 운항되는 항공기에 환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환적에 관한 명시가 있는 항공운송서류도 은행이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항공화물이 Container, Pallet 등에 의하여 단위화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환적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운송관행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 1993년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ICC 한국국내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1993, p.81.

3) Original 3(For Shipper)를 가리킨다. 즉, 3장의 원본과 여러장의 부분으로 구성된 항공운송장(AWB) 중 청색으로 구성된 '송하인용'을 의미한다.